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공보

제341호 2014. 6. 11.(수)

선람	기관의장

훈 령

○ 사천시 훈령 제281호 사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- 2

회람										

발행 : 사천시 편집 : 기획감사담당관실 ☎ 831-2215·FAX 831-6011

훈 령

사천시 훈령 제281호

사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14년 6월 11일

사 천 시 장　정 만 규

사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

사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사천시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사천시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위원회”를 “사천시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, 당연직위원은 총무국장, 지역개발국장이 되고,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회의원 2명과 학식과 행정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2명을 시장이 위촉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3년”을 “2년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분기별 1회”를 “안건이 발생한 때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간사)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
제10조 중 “범위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하고, 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”를 “조례에 따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